

제285회
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제 안 설 명 자 료



2019. 2. .

서울특별시교육청

안녕하십니까?

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입니다.

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·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

- 서울형 통합운영학교 도입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,
-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7.12.29. 개정된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9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학교장이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하기 위함입니다.

□ 관계 법규는

- 학교의 통합·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,
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등을 규정하고 있는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9조,
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의견수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4입니다.

□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

- 먼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4항입니다.

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 통합·운영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
-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1항입니다

2015.9.19.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6521호, 일부 개정) 개정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설치 근거조항이 제59조제5항에서 제6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.

-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입니다

제2항은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학부모의 의견수렴 대상 심의사항을 기존 “영 제59조의4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”에서 “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”으로 개정하고, 학교장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
- 같은 조 제3항은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는 심의 사항을 “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”에서 “영 제5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개정하여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